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I.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노인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II. 주요골자

- 서구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완화(안 제5조)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8조 제4항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규정이 모호하므로 삭제(안 제8조 제4항)

III.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노인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의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